

# 건설하도급 문제점과 대책방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인 김재경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지난 9월 19일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 문제점과 대책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설하도급문제점과 대책방안」을 기초발제로 발표하고 손태락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장, 정민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팀장,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 박돌출 건외협 협력분과위원장, 이서구 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관리부장, 조성구 중소기업상생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재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들으면서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느낀 중요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건설하도급 문제였다”면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코자 건설하도급 정책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재경 의원은 또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건설하도급의 실태와 대책이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길 기대하며, 논의된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설비건설업계 대표로 토론에 나선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는 “건산법에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은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지적한 뒤 “구체적인 불공정하도급행위를 건산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불공정행위로 발생되는 이익의 10배 이상 처벌조항 신설 △최저가낙찰대상공사는 원도급자 수주금액의 88%로 저가하도급 심사기준 상향조정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저가하도급심사기준 강화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해 이중계약시 원·하도급자 쌍방처벌” 등을 주장했다. 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개선사항으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현행 30억에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수의 하도급업체가 불공정하도급계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정부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면 사용하는 업체에게 입찰 등에 가산점 부여 △계약관련 서류에 계약특수조건, 공사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에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반시 강력한 처벌조항 신설” 등을 주장했다.

이밖에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건산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 시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금지조항을 폐지하여 단순 복합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부여 △CM업을 활성화하여 CM에 의한 공종별 발주” 등을 주장했다.

이날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가 발표한 토론요지는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 “전문건설업자도 일반건설업자와 동등하게 입찰참가 기회 보장돼야 건설하도급 문제 해결”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

### I 건설경기현황

- 민간건설경기는 8.31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고, 공공공사 또한 최저가 낙찰제와 BTL사업 확대시행으로 수익률이 크게 악화됨 ⇒ 민간·공공 전분야에 걸쳐 건설경기 최악
- 건설수주물량(2006년 6월) : 수도권 7.3%, 지방은 22.7%감소
- 폐업신청(2006년 8월) : 일반(387개사), 전문(3,147개사)
- 당좌거래중지(2006. 4~7월) : 160개사
- EITC 도입에 따른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제출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 가중
- 건설사업자 부담금 : 노임의 11.44%(근로자 부담

금 대납시 18.18%)

- 건설노조활동 강화로 전문건설업계 경영여건 악화
- 포항 건설플랜트 노조 불법파업 장기화
- 노조 단체협약시 임금 50%이상 상향조정 생산성은 50%이상 하향되어 결국은 100%노임상승

### II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현황

- 건산법 제38조에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위법시 시정명령을 할수있는 벌칙조항이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선언적인 조항임.
- 저가하도급에 대한 발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도급 수주금액의 82%미만 하도급시에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토록 규정(하도급 저가 심사기준)

#### □ 문제점

-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건산법 제38조 조항이 불공정하도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없음
- ※ 작년(2005년) 10월부터 11월사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금년 1월에 보도한 불공정하도급 실태조사에 나타난 불공정 계약 사례를 보면, 계약관련

서류인 계약 특수조건, 공사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에 추가공사비 없음, 물가변동없음, 민원발생비용 하도급자 부담등 불공정 계약조항을 공공연하게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도급 저가심사기준도 실제하도급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 원도급자 수주금액의 82% 미만시 저가하도급을 심사토록한 규정은 원도급자가 아무리 저가로 수주해도 수주금액의 18%는 남기고 하도급 할 수 있음 (저가수주 피해는 고스란히 하도급자에게 전가)

※ 최저가 낙찰공사에서도 원도급자에게는 18%의 이윤과 관리비가 보장되므로 원도급자에게 덤핑입찰을 유도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개정(2006. 7. 19)

- 하도급 심사결과 85점미만이라도 시공 및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 제출시 하도급 적정성 심사통과
- 하도급 심사항목 중 가격배점(60→50점)은 하향 조정하고 시공능력(10점→20점)을 상향 조정하여 저가하도급 유도

※ 저가하도급 심사기준을 크게 완화한 내용으로 사실상 저가하도급 방지를 어렵게 만들었음

### □ 개선방안

- 1) 불공정하도급행위를 구체적으로 건산법시행령에 명시하고 위반시 강한 처벌(불공정행위로 발생하는 수익의 10배이상 벌금)
- 2) 최저가낙찰대상공사는 원도급자 수주금액의 88%로 저가하도급 심사기준을 상향조정(건산법시행규칙 개정)등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강화
- 3)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이중계약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쌍방처벌

## Ⅲ 하도급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현행

○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시공능력 30억이상인 경우만 적용

○ 불공정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으나, 권장사항으로 시행

### □ 문제점

○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일반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건설업체 58%정도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권장사항임에 따라, 원도급자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계약기준”을 마련하여 하도급계약시 사용

※ 하도급자는 수주를 위해서 일방적인 불이익 감수

### □ 개선방안

○ 하도급법적용대상을 현행 30억에서 그 범위를 대폭 확대(시공능력 10억원 이상)하여 다수의 하도급업체가 불공정하도급계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시급

○ 정부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면, 사용하는 업체에게 입찰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필요

#### IV 겸업제한제도 폐지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 □ 겸업제한 제도

- 1975년 하도급을 위주로 하는 전문건설이 도입되어 30년간 일반·전문의 균형발전과 건설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일반과 전문의 겸업을 금지(건설법 제12조)
- 정부에서 겸업제한 폐지에 대한 건설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06. 7. 24)하고 현재 국회상정을 위한 당정 협의중

##### □ 겸업제한 폐지시 문제점

- 일반건설이 전문건설의 영역인 하도급 시장까지 독점
  - 겸업이 허용되면,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을 손쉽게 등록하여 일반건설시장(원도급시장)은 물론이고 전문의 하도급시장까지 독점
  - 전문건설업은 일반건설업 등록이 거의 불가능하며, 등록을 하여도 시공실적이 없어 입찰참여가 불가능

- 전문건설은 원도급 입찰참가 기회가 거의 없으며 하도급 시장까지 일반에게 빼앗겨 전문건설은 괴멸
  - 단순히 겸업제한만을 폐지할 경우, 경제적 강자인 일반건설업자에게 전문건설의 하도급시장까지 내주는 일방적인 개정안임

##### □ 건의사항

- 정부가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일반과 전문의 구분 없이 건설업으로 통합한다면, 전문건설업자도 일반건설업자와 동등하게 입찰참여 기회 보장(건설법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개정필요)
  -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금지조항을 폐지하여 단순 복합공사의 입찰참가 자격 부여
  - CM업을 활성화하여 CM에 의한 공종별 발주가 가능토록 개선
    - ※ 공사를 직접시공하는 전문업자에게 직접 발주하여 기능인력의 고용안정과 부실시공 방지(독일, 일본등 선진외국의 건설생산방식)◎

영어 유머

### I beg your pardon – 용서하세요

The preacher was holding forth against the sin of hatred. At the close of his exhortation, he asked any one who had succeeded in conquering hatred to stand up.

Only one man got to his feet, 104 year-old uncle Baker.

“You don’t hate anybody?” “No, sir.” “Tell us why that is.”

“Well, all of those skunks who had done me dirt, they’re all dead!”

목사님은 미움의 죄악에 대해 설교 했다. 한참 설교하고 나서 그는 증오심을 극복해 본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 보라고 했다. 일어난 것은 단 한 사람, 1백4세의 베이커 아저씨였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신단 말씀이시죠?” “그럼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는지 이야기 좀 들어 봅시다.”

“나한테 못되게 굴던 그 교약한 놈들은 모두 죽었거든요!”

「재미있는 영어이야기에 확 빠져들기」 중에서